

##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 제25조 1항에 따라 당사의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예정이며, 주권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전자등록일(2019.09.30)부터 권리자(주주 및 질권자)가 소유중인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, 권리자는 전자등록일 2영업일 전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하며, 권리자별 세부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b>주주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2019.09.26일까지 증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증권계좌에 입고 요청</li><li>- 2019.09.26일 이후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증권계좌에 입고 요청</li><li>*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2페이지 참조</li></ul>
<b>질권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실물주권에 대한 질권 설정내역이 전자등록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, <u>별도 조치 불필요</u></li><li>* 실물주권 질권 말소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</li><li>* 증권계좌 질권등록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</li></ul>

[참고] 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일(2019.09.30)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**2019년 09월 23일**

**주식회사 케이엔제이**

**대표이사 심 호 섭 (직인생략)**

##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

구 분	신청인	필요 서류
개 인	본 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분증</li> <li>2. 주권 실물</li> <li>3.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</li> </ol>
	대리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인 신분증 사본 - 1차 복사본만 가능 (팩스본, 스캔본, 재복사본 불가)</li> <li>2. 대리인 신분증</li> <li>3. 본인 인감증명서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4. 위임장 (본인 인감 날인)</li> <li>5. 주권 실물</li> <li>6.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</li> </ol>
법 인	대표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2. 대표자 신분증</li> <li>3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-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</li> <li>4. 주권 실물</li> <li>5.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</li> </ol>
	대리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2.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3. 위임장 (법인인감 날인)</li> <li>4. 대리인 신분증</li> <li>5. 주권 실물</li> <li>6.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</li> </ol>